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6-53
----------	-------

2026. 4. 22.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자원순환과)
- 나. 제 출 일 : 2026. 4. 8.
- 다. 회 부 일 : 2026. 4. 15.

2. 제출이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 나. 추진계획의 수립 및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사업 대상인 포장재의 근거 법령 명시(안 제7조)
- 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범위 변경(안 제9조)
- 마. 표창의 근거 조례 명시 등(안 제1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6. 3. 5. ~ 2026. 3. 25.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생활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제출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입법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됨.

### 나. 주요 개정 조문 검토

- 안 제2조 “공공기관” 정의 신설은 정책 집행 범위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국무총리훈령에서 이미 포괄적인 공공기관 범위를 규정<sup>1)</sup>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마포구 소속기관 중심의 한정된 정의를

---

1)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동일 정책에 대한 적용 범위 차이와 훈령과 조례 간 적용대상이 불일치로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신설은 1회용품 저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미 국무총리 훈령에서 공공기관의 실천사항과 홍보 및 실천 운동, 평가체계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 실행계획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적 요소 없이 조례에 중복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기존 제6조 교육·홍보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4조제2항 추진 계획에 '홍보 및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게재로 인한 조문 간 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감축의 솔선수범 주체가 되어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입법 시도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미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범위, 사용 제한의 행위 기준 등을 상세히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이 이를 단순 반복하거나 완화된 선언적 규정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자치법규로서의 독자적인 규범과 실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위 규범을 답습하는 수준의 입법은 행정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이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 또한, 안 제4조(추진계획) 제2항에서 ‘홍보 및 교육’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제6조(개정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 홍보’와 내용이 중첩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정책 수단을 이중으로 규정하여 조문 간의 체계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조문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조례가 자치법률로서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원 재활용법」 등 상위법령의 규제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마포구만의 특화된 지원책을 발굴하여 조례의 기능을 ‘제한’에서 ‘구성 및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 사용 금지 또는 반입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②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제1항 각 호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을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